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 선고 2020가단437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10. 16

판결 선고 2020. 11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0,677,567원 및 그 중 169,840,000원에 대하여 2019. 8. 22.부터 2020. 2. 2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주식회사 D(변경 전 E 주식회사,이하 '소외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 'F공 사' 중 건축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공사이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표 기재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연 9%로 하기로 약정하였다.

보 험 계 약 내 용				
증권번호	보험계약자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
G	(주)C	(주)D	금 169,840,000원	2017.2.17.- 2017.11.20.

나.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. 7. 22. 소외 회사에 169,840,000원을 지급하였다. 위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2019. 8. 21.까지 연 6%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837,567원(= 169,840,000원 X 0.06x 30/365)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170,677,567원(지급보험금 169,840,000원 + 2019 . 8. 21. 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837, 567원) 및 그 중 지급 보험금 원금169,840,000원에 대하여 2019. 8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. 2. 24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보람